



영국 기름유출 등 선박오염에 관한 법규제정 동향

I. 서설

최근 국내에서는 선박의 기름유출사고로 넓은 해안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다. 이러한 선박유류오염과 관련된 사고들은 그 경제적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이러한 선박의 기름유출사고를 예방하고 그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규범적 기준이 국제적 협약으로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규범이 국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며, 또한 국내법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영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박에 관한 국내규범들을 제정하여왔다. 선박의 오염에 관한 국제규범이 제정되면서 그것을 국내법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도 해당되는 내용을 꾸준히 반영하였다. 특히 1995년 제정된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1995)에서는,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민사적 피해보상규정뿐만 아니라 선박오염의 예방과 규

제를 위한 다양한 규정들을 마련하였고, 이것을 영국의 일반적인 상선 규제 규정들과 함께 통합하였다. 이후 새로운 국제협약의 체결과 오염규제규범의 발전에 따라서 2006년 상선(오염)법(Merchant Shipping (Pollution) Act 2006) 등 새로운 국내규범도 제정하였다.

아래에서는 1995년 상선법의 오염 관련 규정과 2006년 상선오염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영국에서 제정된 선박오염사고 관련 규범제정의 동향을 살펴본다.

II. 1995년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1995)의 유류오염사고 관련 규정

1995년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1995) 제6부(제128조부터 제182조)는, 유류사고에 따른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제3장과 제4장의 규정에서 수용하면서, 이외에도 상선의 일반적인 오염을 예방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자세한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본 상선법의 규범들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영국 내에서는 국제적 규범에 맞춘 선박유류 오염 관련 규범들이 오래전부터 제정되어 여러 개정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그러나 본법의 제정

과정에서, 민간선박에 관한 등록, 규제, 감독 등 일반적인 다른 규정들과 함께 선박의 오염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제6부에 속하는 규정들의 상세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6부 오염방지(Prevention of Pollution)

제1장(Chapter I) 총론(Pollution Generally)

- 128.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등(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etc)
- 129. 선박오염방지 상세규정(Further provision for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 130. 영해내 선박간 이송에 관한 규제(Regulation of transfers between ships in territorial waters)

제2장(Chapter II) 유류오염(Oil Pollution)

오염방지를 위한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s for preventing pollution)

- 131. 영국 영해내의 선박기름유출(Discharge of oil from ships into certain United Kingdom waters)
- 132. 제131조 위반에 책임있는 소유자 또는 선장의 항변(Defences of owner or master charged with offence under section 131)
- 133. 제131조 위반에 책임있는 사용자의 항변(Defences of occupier charged with offence under section 131)
- 134. 항만당국의 권한행사 등(Protection for acts done in exercise of certain powers of harbour authorities, etc)
- 135. 야간 유류이송 제한(Restrictions on transfer of oil at night)
- 136. 항만에서의 기름유출에 대한 보고의무(Duty to report discharge of oil into waters of harbours)

선적사고(Shipping casualties)

- 137. 선적사고(Shipping casualties)
- 138. 비정상적인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한 보상권(Right to recover in respect of unreasonable loss or damage)



- 139. 제137조 위반(Offences in relation to section 137)
- 140. 제137조에 따른 지시(Service of directions under section 137)
- 141. 외국 및 기타 선박에 대한 제137조 내지 제140조의 적용(Application of sections 137 to 140 to certain foreign and other ships)

강행규정(Enforcement)

- 142. 유류기록(Oil records)
- 143. 벌금징수 및 고발조치(Prosecutions and enforcement of fines)
- 144. 제131조 위반 관련 선박유치권(Power to detain ships for section 131 offences)
- 145. 제144조의 해석(Interpretation of section 144)
- 146. 벌금의 적용과 징수(Enforcement and application of fines)
- 147. 기름유출 사고 관련 협약의 적용(Enforcement of Conventions relating to oil pollution)

기타 부가규정(Miscellaneous and supplementary)

- 148. 주무장관의 면제 권한(Power of Secretary of State to grant exemptions)
- 149. 국영선박에 대한 적용(Application to Government ships)
- 150. 연감(Annual Report)
- 151. 해석(Interpretation)

제3장(Chapter III) 유류오염에 대한 책임(Liability for Oil Pollution)

서설(Preliminary)

- 152. ‘책임협약’ 및 관련 표현의 의미(Meaning of “the Liability Convention” and related expressions)

책임(Liability)

- 153. 유조선의 유류오염 책임(Liability for oil pollution in case of tankers)
- 154. 기타 선박의 유류오염 책임(Liability for oil pollution in case of other ships)
- 155. 제153조와 제154조의 책임에 대한 예외(Exceptions from liability under sections 153 and 154)
- 156. 유류오염 책임 제한(Restriction of liability for oil pollution)

책임의 한계(Limitation of liability)

- 157. 제153조 책임의 한계(Limitation of liability under section 153)

- 158. 한정조치(Limitation actions)
- 159. 한정기금 조성 이후 집행의 제한(Restriction on enforcement after establishment of limitation fund)
- 160. 소유자와 기타 관련자의 동시책임(Concurrent liabilities of owners and others)
- 161. 영국 외에서 한정기금의 조성(Establishment of limitation fund outside United Kingdom)
- 162. 청구권의 소멸(Extinguishment of claims)

강제보험(Compulsory insurance)

- 163. 오염책임에 관한 강제보험(Compulsory insurance against liability for pollution)
- 164. 주무장관의 증명서발급(Issue of certificate by Secretary of State)
- 165.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권리(Rights of third parties against insurers)

부가규정(Supplementary)

- 166. 영국법원의 관할권과 외국 재판의 등록(Jurisdiction of United Kingdom courts and registration of foreign judgments)
- 167. 국영선박(Government ships)
- 168. 제154조 책임의 한정(Limitation of liability under section 154)
- 169. 부가적 청구의 유보(Saving for recourse actions)
- 170. 해석(Interpretation)
- 171. 본장의 이행규정과 이행규정제정권(Transitory text of this Chapter and power to make transitional provisions)

제 4 장(Chapter IV) 국제유류오염(International Oil Pollution) 보상기금(Compensation Fund)

서설(Preliminary)

- 172. ‘책임협약’, ‘기금협약’, 기타 관련 표현의 의미(Meaning of the “Liability Convention”, “the Fund Convention” and related expressions)

기금의 분담(Contributions to Fund)

- 173. 유류수입자 및 기타 관련자의 출자(Contributions by importers of oil and others)
- 174. 정보취득권한(Power to obtain information)



오염피해자에 대한 보상(Compensation for persons suffering pollution damage)

175. 기금의 책임(Liability of the Fund)

176. 제175조에 따른 기금의 책임에 대한 한계(Limitation of Fund's liability under section 175)

부가규정(Supplemental)

177. 관할권과 판결의 효과(Jurisdiction and effect of judgments)

178. 청구권 소멸(Extinguishment of claims)

179. 대위(Subrogation)

180. 기금 관련 절차에 관한 부가규정(Supplementary provisions as to proceedings involving the Fund)

181. 해석(Interpretation)

182. 본장의 이행규정과 이행규정 제정권(Transitory text of this Chapter and power to make transitional provisions)

제1장은 총론으로 선박에 관련된 오염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제2장은 선박에 관련된 오염사고 중에서 가장 피해가 광범위한 기름유출 및 오염에 관한 예방과 사고 관련 규정들을 두었다. 본장에서 규정된 내용들은 주로 영국내 항만에서 유류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당국이 취할 수 있는 권한들과 관리사항 벌금, 사고발생시 보상권의 한계 등에 관한 것이다.

제3장과 제4장은 1992년 체결된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과 같은 해에 체결된 유류오염피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을 영국 내에서 이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3장은 선박유류오염사고에 관한 책임의 내용과 그 한계, 제한 등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책임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강제적인 선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영국정부의 선박에 관한 특별규정과 재판관을 진행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제4장은 유류오염 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규정들은 기금으로 보상해야 하는 범위와 한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출자자, 보상청구를 위한 사항 등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III. 2006년 상선오염법(Merchant Shipping(Pollution) Act 2006)의 제정과 내용

2003년 5월, 기금협약(Fund Convention)에 관한 부가의정서(Protocol)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 채택되었다. 본 의정서는 기존의 협약들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액수의 유류오염에 관한 피해보상액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보다 큰 규모의 새로운 보상범위 제정이 기존의 유류오염에 따른 피해보상절차규범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규모 피해에 대한 더욱 안정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북해지역과 같이 대규모 유조선이 유류오염사고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영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영국은 2005년 5월 본 의정서가 발효된 당시에도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에 속하지는 않았었다. 실제로 많은 유조선 사고로 인한 오염사건 중, 1967년 토리캐년(Torrey Canyon)호 사건부터, 1997년 시엠프레스(Sea Empress)호 사건까지 대규모 유조선 사고의 해당지역이 영국의 영해인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EU 집행위원회는 2004년 3월, 각 회원국이 본 부가의정서에 2005년 6월 이전까지 조속히 참여하도록 결정하였고(2004/246/EC, 4 March 2004), 이에 따라 영국 내에서 본 부가의정서의 내용이 법률로 효력을 갖기 위한 법률인 2006년 상선오염법(Merchant Shipping

(Pollution) Act 2006)이 제정되었다. 본법은 4개조로 구성된 짧은 법률이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선박유류오염사고 보상 관련 국제개정조약들의 이행권한(Power to give effect to revisions of the international arrangements relating to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from ships)
- ② MARPOL 협약 제6부속서의 이행권한(Power to give effect to Annex VI of the MARPOL Convention)
- ③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 청구기간의 제한(Limitation period for claims against the International Fund)
- ④ 명칭, 발효 및 연장(Short title, commencement and extent)

본법 제1조는 기존의 유류오염보상규범을 대체하거나 변경하는 새로운 규정들과 기금부가의 정서의 영국내 이행을 위한 것이다.

본법 제2조는 선박으로부터 공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를 영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MARPOL 협약은 1973년에 체결되고 1978년과 1997년 의정서를 통해서 보강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을 말한다. 본 협약 제6부속서의 목적은, 선박의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국제적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이다. 본



부속서는 모든 선박들이 인증을 받아 운행되도록 하고, 특정지역을 운행하는 선박의 연료에 유황성분을 제한한다. 영국은 MARPOL 협약의정서를 2004년 8월에 서명하였으며, 제6부속서는 2005년 5월에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본법 제3조는 1995년 상선법 제178조 제1항의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기금협약 제6조는 피해보상청구권이 해당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1995년 상선법 제178조 제1항은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본법 제175조 제1항에 따르면, 기금은 본법 제153조에 의한 보상(선박소유자 또는 보험금을 통한 보상)으로 완전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청구권 소멸시기와 관련하여, 제178조 제1항이 의미하는 내용이 선박소유자로부터 유류오염피해를 모두 보상받지 못한 시기로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에, 협약의 의미에 따라 보다 명확하게 한 것이다.

본법은 2005년 5월에 영국의회에 법률안으로 제출되어, 상하원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2006년 3월 30일에 제정되었다.

IV. 결어

1995년 영국의 상선법에 마련된 선박오염에 관한 책임과 보상에 관한 규정들은, 국제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것이 상선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법이 단순히 선박으로부터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에 대해서 민사상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관리를 하려는 내용도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제정된 상선오염법에는 기금설치 부가의정서에 따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규정들을 제정한 것과 함께, 유류오염이 아닌 선박의 엔진에서 사용하는 공해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이러한 영국의 선박사고 예방과 관리, 유류 등 오염에 대한 규정 내용은 우리나라의 관련법규 제정과 개정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김 봉 철

(영국 주재 외국법제조사원)